

산업자원부, WTO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작업 추진

- 렌즈연마, 코팅, 마운팅공정을 원산지로 규정할 것인가 -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WTO원산지규정협정에 따라 모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즉 경제적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WTO협정 체결시 향후 작업과제로 명시된 사항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에 대해 알아보고 렌즈연마, 코팅, 마운팅공정 등 광학관련 제품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제시된 의견과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자.

-편집자 주-

먼저 WCO(세계관세기구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원산지 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가 설치되었고 동 기구는 WCO사무국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기술적 검토는 2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검토는 각국이 주장하는 제안에 대하여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기술적 작업은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기 보다는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기술적으로 합리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기술적 검토 과정을 통하여 미합의된 사항은 WTO로 송부된다. TCRO는 98. 7월 현재까지 1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WTO에서는 WCO에서 합의된 사항을 승인하고, WCO로부터 송부된 미결쟁점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98. 7월 현재까지 원산지규정 위원회(CRO)는 18차례의 공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비공식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WTO에서는 현재까지 WCO에서 송부된 품목별 미결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중요쟁점 사항은 아직 미합의된 상태이다.

CRO에서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는 WTO 각료이사회로 송부되며 전체 작업결과 승인과 함께 통일원산지규정의 시행일자 등을 확정하게 된다.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 추진 체제)

작업기구	작업내용	성격	비고
WCO(세계관세기구) 원산지 기술위원회(TCRO)	1차 : 제안 2차 : 기술적 근거 제시	기술적검토	미합의 사항은 WTO로 송부
WTO원산지규정위원회 (CRO)	· WCO 합의 사항승인 · 미결쟁점사항 결정	정책적 결정	WCO에서 합의된 사항은 재론 불가
WTO각료이사회	종료시 전체 작업결과 승인, 시행일자 확정 등		

〈통일원산지규정 제정관련 주요 논의내용〉

● 광학·측정·의료기기등 (90류)

가. 광섬유

쟁점사항인 母材(preform)로부터 광섬유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모재를 코팅하는 공정이 핵심공정이며 이를 인발하여 광섬유를 생산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지지하였다. 참고로 母材는 광섬유 생산에 사용되는 지름 5cm, 길이 1m정도의 유리봉을 말한다. 한편 광섬유 다발(bundle) 생산공정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광섬유 케이블을 생산하는 공정은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국가의 의견 일치하였다.

나. 렌즈·광학기기 등

광학렌즈 연마(polishing) 공정(9001)에 대하여 미국은 유리제품(70류)에 분류되는 렌즈 반가공품(blank)을 수입하여 연마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소재를 수입하여 연마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원산지 인정입장을 지지하고, 동 공정이 투명한 鏡面으로 가공하는 중요공정일 뿐 아니라 광학렌즈의 품질을 결정하는 收差를 조절하는 핵심공정이라는

기술적 근거를 설명하였다. 收差는 실제 傷과 렌즈를 통하여 얻는 傷의 차의 차이를 말하는데 형태의 왜곡(seidel aberration)과 색상의 왜곡(chromatic aberration)의 2종류가 있다.

렌즈의 코팅공정(9001)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렌즈의 fabrication 공정(core drilling, 연마, bezeling gring) 및 코팅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을 주장한 당초입장을 철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bezeling grinding이 단순한 마무리 공정이 아니라 광축으로부터 편심을 조정하는 芯取(centering)공정이라는 점, 적외선망원경 등을 생산하는 경우 coating 공정이 중요하고, 특수렌즈의 경우 다층의 코팅(예 : 64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렌즈의 mounting 공정(9002, 9004, 9005) 즉, 렌즈·프리즘 등을 수입하여 망원경, 천체관측기구, 사진기용(교환가능)렌즈 등의 광학기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인정(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 및 불인정 입장(미국, 일본, 멕시코)이 대립하였다. 우리나라는 高價品의 경우 렌즈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산지 인정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 보통 이들 광학기기가 렌즈 단품으로는 기능이 성립하지 않아 수개의 렌즈가 필요하게 되므로 렌즈의 서로 다른 굴절율을 감안한 mounting 설계, focusing mechanism 등에 기술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조준경(riflescope) 등 특수 광학기기의 경우 경통내에 진공상태가 필요한 점 등 원산지 인정 입장의 기술적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카메라, 영사기, 프로젝터 등(9006~9008)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먼저 렌즈가 일체형인 카메라(예 : 자동차 카메라)의 경우는 조립공정에 원산지가 인정된다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렌즈교환이 가능한 카메라, 영사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브라질), body를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미국)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은 렌즈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에 대하여 당초 전용부품으로부터의 조립공정을 인정하기 위하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동 기준은 단순히 body에 렌즈를 부착하는 것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동 문제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